

청주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1가단71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유경태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21. 3.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29,746,5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746,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C 사이의 2021. 3.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마.항 및 바.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가 C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1328 사건에서, ‘C은 D 주식회사에게 13,168,933원 및 그중 12,645,780원에 대하여 연 27.9%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C의 부친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3. 2. 사망하였고, 피고와 C 및 E의 자녀 F, G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1. 6. 30. 접수 제12617호로 2021. 3.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H조합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7. 14.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마. C은 2021. 3. 2.경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여부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3.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이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인 C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E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여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와 C 사이의 2021. 3. 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이 E의 생전에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68,346,850원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45,590,000원을 증여받는 등 합계 113,936,850원을 특별수익 하였다. C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위 특별수익액을 넘어서지 않는 한, 피고와 E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넘어서한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수익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그 미달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는 C의 특별수익의 근거로 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을 제1호증, 제2호증 중 대출거래내역 부분)만으로는 피고가 2010. 11. 5.경 I조합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이 2012. 12. 20.까지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대출금이 C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나 위 대출원리금을 E이 갚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3호증의 예금거래내역에서 E이 C에게 돈을 보냈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2013. 11. 22.자 200만 원이 유일하고, 다른 내역의 경우 해당 금액이 C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을 제2호증 중 사실확인서 부분 기재는 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로부터는 C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증거가 C이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E의 사망 전에 E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취소의 범위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는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고(반환의 범위는 사해행위 후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사해행위가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별지 목록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 관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2.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양수금 채권액(29,746,511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마.항 및 바.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원상회복도 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스스로 별지 목록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의 가액(사해행위 당시의 시가에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이 위 채권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밝혔는바,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취소 및 가액상환의무

피고와 C 사이의 2021. 3. 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채권액 29,746,5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상환으로 위 29,746,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